

G!O!B!A!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일본 | 일본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 | 국가 귀속 세수를 지방 자체재원으로 - 프랑스 파리의 공실 주택세(TVLH) 개혁 사례

독일 | 독일 지방재정 위기와 자체세입 권한의 한계

미국 | 매사추세츠(MA)주 Fair Share Amendmen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지방 자체세입 제도: 권한 위임, 재정위기 대응, 징수체계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 |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의 함의

한국 | 자체세입 확보 수단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역할과 기능





자체세입 확보 수단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역할과 기능

자체세입 확충 방안으로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역할

-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역대 정부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53.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통한 국세·지방세 비율 7:3 상향을 추진하고 있음
 - » 이재명정부에서는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조정,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모색하고 있음
- ▶ 자주재원 확충은 ①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충, ③ 지방세 세율 인상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의 자체적 노력으로 신세원 발굴에 주목하고 있음(김필현, 2024)
- ▶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신규 세목 개설의 제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정자원 및 시설 등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확대를 모색함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헌법」 제54조의 조세법률주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세율 그리고 과세대상 등이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에는 제약이 있음(이정가·유태현, 2015)
 - » 지역자원시설세는 다른 지방세목과 달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자주권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세목임(김필현 외, 2024; 행정안전부, 2025)

[표 1.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요]

구분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과세대상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건축물, 선박
과세목적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
납세의무자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취급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입항·출항 자, 원자력 및 화력발전을 하는 자	건축물 또는 선박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①발전에 이용된 물 2원/10㎥, ②음용수(200원/1㎥), 온천수(100원/1㎥), 기타(20원/1㎥), ③채광된 광물가액의 0.5%	①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 5천원, ②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③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건축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에 표준세(0.04~0.12%)과 중과세율(2~3배)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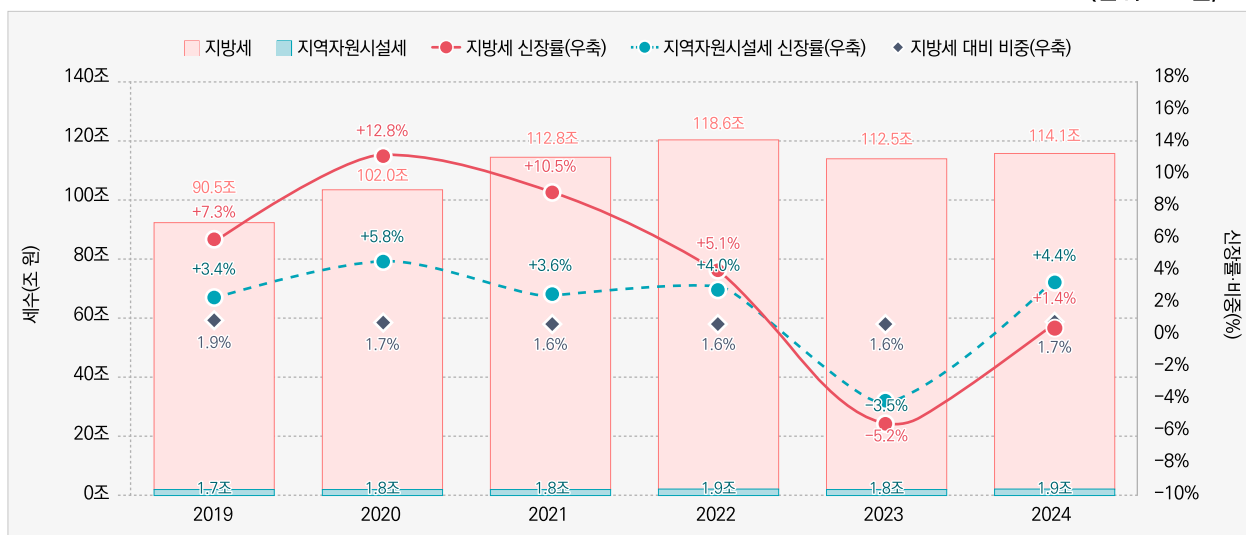
출처: 김필현(2024) 재구성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 2024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1조 9,288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규모(114조 584억 원)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조 6,806억 원 대비 증가함
- ≫ 지방세는 2019~2023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동 기간 2.8% 증가하여 증가세는 다소 낮음

[그림 1. 지역자원시설세 규모 변화]

(단위 :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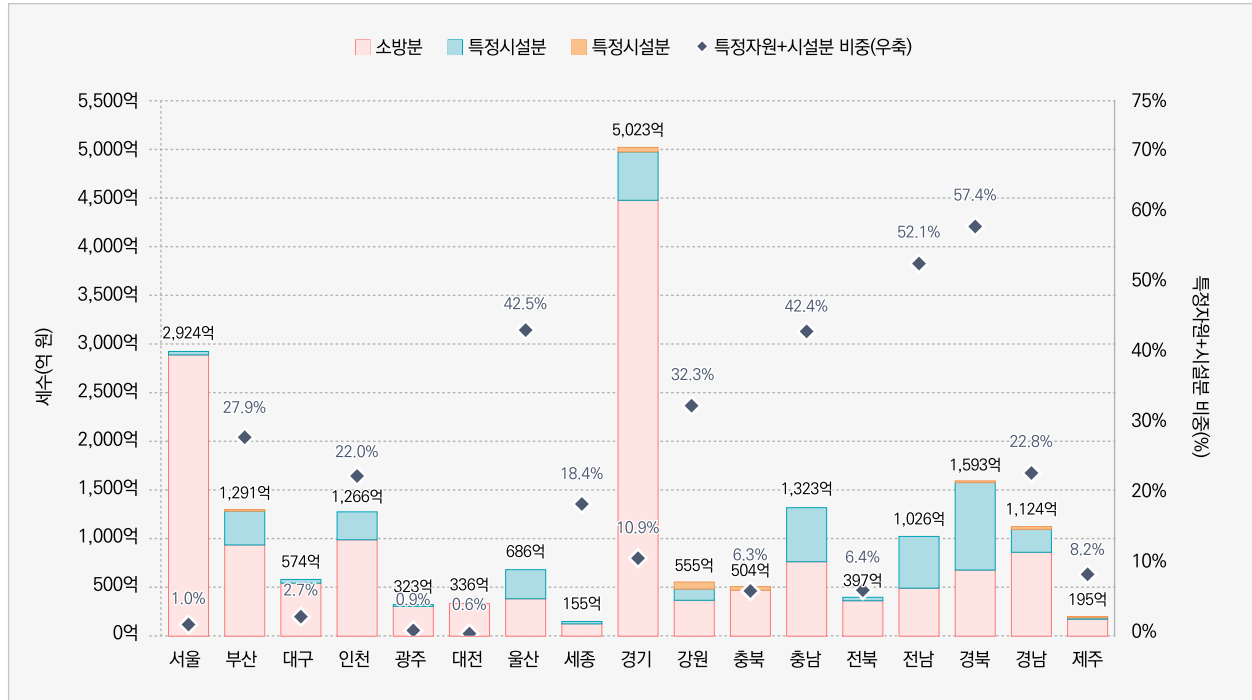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2025)

- ▶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시·도별 평균 규모는 1,135억 원 수준이며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9%로 소방분의 비중이 높음
- ≫ 경기(5,023억 원), 서울(2,924억 원), 경북(1,593억 원) 등은 타 시·도에 비해 지역자원시설세 규모가 크나 반면 세종(155억 원), 제주(195억 원), 광주(323억 원)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가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세원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됨
- ≫ 소방분을 제외한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경북(57.4%), 전남(52.1%), 충남(42.4%) 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반면 서울은 1.0% 수준으로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을 기반으로 한 자원 확충 효과가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지역자원시설세 시·도별 분포: 2024년]

(단위: 억 원, %)



자료: 행정안전부(2025)

지역자원시설세의 잠재적 세원 및 확충 전략

- ▶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규 세원을 학계에서는 해양심층수(이상훈·김진하, 2020), 천연가스(이상훈·김진하, 2020), 송·변전 시설(하능식, 2018), 폐기물(김행선, 2016), 유해화학물질(이장욱 외, 2018), 정유·저장 시설(이준기, 2019), 시멘트생산(김필현, 2020), 양수발전(이상훈, 2021), 수소연료전지 발전(이기환, 2021) 등이 제시됨
- ▶ 22대 국회에서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김상욱 의원 등), 정유·저장시설, 천연가스 저장시설(김소희의원 등), 해저광물자원(김정재 의원 등) 등의 신세원 발굴을 모색함
- ▶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발굴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이중과세 가능성 및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 여부, 그리고 과세 형평성과 세원의 편중성 등이 세원 발굴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김필현, 2024) 관련 기초자료의 꾸준한 축적과 쟁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함
 - » 신규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관련한 환경적 피해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기초 자료 확충으로 외부비용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함
 - »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세율 결정을 위한 담세능력 판단을 통해 납세 시 발생하는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신규 세원들에 대한 순차적인 입법 추진으로 신세원 발굴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김필현. (2024).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세입 기반 확충 : 지역자원시설세를 중심으로. 「공공 정책」, 22: 15-17.
- ▶ 김필현. (2020). 시멘트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운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 김행선. (2016).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 대한민국 정부. (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 이기환. (2021). 수소연료전지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 이상훈·김진하 「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확대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 ▶ 이장욱·서정섭·유태현. (2018). 재정분권화시대 신세원 발굴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2(1): 161-190
- ▶ 이정기, 유태현. (2015).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평가와 확충 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64: 323-350
- ▶ 이준기 (2019). 정유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검토: 전남여수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 하능식. (2018). 송·변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타당성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 ▶ 행정안전부. (2025). 2025 지방세 통계연감.

최 정 우 부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jungwoo1088@krila.re.kr.